

# 한세에스 24 문화재단

##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운영 규정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세에스 24 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) 정관의 시행 세칙인 「사업 운영 규정」 제 4 조 제 1 항 제 5 호의 연구 활동 및 학술, 교육 지원사업에 준하여 시행되는 ‘인문학연구지원사업’에 관한 운영 방침을 규정한다.

**제 2 조(사업 목적)** 인문학 육성을 위한 ‘인문학연구지원사업’은 “재단”의 장기적 연구 사업으로서 국내 인문학의 탐구와 발전을 위해 기획되었으며, 국내 인문학 분야의 우수 연구를 발굴하여 인문학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 조(재단의 역할)** ‘인문학연구지원사업’의 운영을 위해 재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.

- 1) 본 사업의 전반적인 지원방향, 시행 시기 등 지정
- 2) 본 사업의 사업공고 및 접수
- 3) 본 사업의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지침 지정
- 4) 본 사업의 선정자에 대한 사업비 관리
- 5) 연구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관리 감독
- 6) 기타 운영 관련 제반 업무 운영

**제 4 조(지원 범위 및 분야)** 인문학 분야의 연구과제를 지원범위로 한다. 지원 영역은 연구논문 집필을 목적으로 하는 ‘연구분야’로 구성한다.

**제 5 조(지원 대상)** 지원자는 최근 5년간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(SSCI, A&HCI, SCOPUS) 주저자 논문 2 편 이상의 연구경력을 지닌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국내외 대학의 강사 및 교수, 연구소 소속 연구자 또는 무소속 연구자여야 하며, 주제에 맞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.

개인연구 외에도 공동연구(2 인 이내)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공동연구자 모두 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. 단, 대표연구자를 1 인 지정하여 연구비 수령, 보고서 제출 등 책임을 진다. (신설 2026. 1. 22. )

**제 6 조(지원 한도)** 지원한도는 편당 1,200 만원을 한도로 한다.

**제 7 조(심사위원의 구성과 심사규정)** 본 사업의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한다.

- 1) 심사위원장 1 명
- 2) 심사위원 5 명 (심사위원장 포함) 필요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.
- 3) 심사규정은 재단에서 정한다

**제 8 조(사업비 지원)**

- 1) “재단”은 연구자의 중간보고서, 최종보고서 제출을 조건으로 하여 연구비를 분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연구자 또는 연구자가 지정한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지원 약정에 의거 연구비를 지급한다.
- 2) 연구비는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하게 집행한다.
- 3) 연구자가 지정한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의 연구비 내역 구성 및 집행,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이에 따른 간접비는 전체 연구비의 5% 이내로 지정한다.
- 4) 연구자가 산학협력단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“재단” 사무국과 상의하여 지급 방식을 정하도록 한다.

**제 9 조 (지원과제의 관리)** “재단” 사무국은 과제별로 지원 대상자 및 기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원 과제별로 현황표(“재단” 홈페이지-관리자페이지)를 작성 비치한다.

**제 10 조 (연구결과물의 정의)** 연구분야의 연구결과물은 학술논문으로서, KCI 등재지 또는 국제학술지(SSCI, A&HCI, SCOPUS)에 게재된 논문을 의미한다. 다만, 재단 규정에 명시된 A&HCI, SCOPUS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연구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널리 인정되는 국제전문학술지는 재단의 논의를 거쳐 연구결과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9. 1.>

**제 11 조 (연구결과물의 귀속 및 이용)**

- 1)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법상, 공법상, 지식재산권법상의 모든 권리 중 일신 전속적인 것은 연구자에게 귀속된다.

- 2)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“재단”에 대하여 연구 약정으로 발생한 연구결과물을 “재단”이 기간 제한 없이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. 또한 “재단”은 본 연구 결과물 및 연구지원 사실을 “재단”의 광고 및 홍보 등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- 3) “재단”은 연구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구자를 대신하여 이 연구결과물에 대한 공표권, 성명표시권, 초상권, 동일성 유지권 등의 행사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있다. 다만, 그 행사를 저작권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한다.
- 4) “재단”은 구체적인 연구 내용에 따라 연구자가 “재단”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 3 자에 대하여 이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.

#### 제 12 조 (연구자 의무 사항)

- 1)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국제학술지(SSCI, A&HCI, SCOPUS)에 게재된 학술논문을 “재단”에 제출해야 한다.
- 2) 연구주제와 내용은 다른 간행물이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.
- 3)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
  - 중간보고서 제출: 연구 개시 후 1년 이내 지정된 양식으로 온라인 접수  
시스템을 통해 제출
  - 최종보고서 제출: 최종보고서는 최종 결과물인 본 조 제 1 항에 정한 바에 따라 게재된 학술논문 제출로 대체한다.
  -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,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잔여 연구비를

지급하지 않는다.

- 4) 연구자는 “재단”이 세미나, 심포지엄 등을 통해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를 요청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.
- 5)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“재단”의 지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.

<국문표기> “이 연구는 한세예스 24 문화재단의 0000년도 ‘제 00 회 인문학연구지원사업’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.”

<영문표기> “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HansaeYes24 Foundation through the 0000 “00th Humanities Research Support Program.”

- 6) 중복 사사표기는 허하지 않는다. <신설 2024. 1. 23.>

### **제 13 조 (연구 기간 연장 규정)**

- 1) 원칙적으로 연구 기간 연장은 허가하지 않는다.
- 2) 다만 예외적으로 합당한 사유(질병이나 상해 혹은 임신, 출산 등의 불가피한 상황에 한함)가 있을 시 “재단”에서 별도 검토 후 승인여부를 연구자 및 산학에 통보한다.

### **제 14 조 (규정 미준수 연구자 제재 조치)**

- 1) 연구자가 중간보고서 등 연구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2) 연구자가 연구 종료 후 1년 내 KCI 등재지 또는 연구 종료 후 2년 내 국제학술지(SSCI, A&HCI, SCOPUS)에 논문을 게재하지 못할 시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 잔여 연구비는 “재단”과 “연구자”의

연구약정서에 따라 연구비 총액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금 전액에 해당한다.

- 3)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(표절, 중복게재 등), 연구자가 범죄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거나 “재단”을 비방하거나 “재단”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및 그 밖에 “재단”이 연구비를 지원한 목적에 반하는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“재단”은 잔여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지급한 연구비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해당 연구자를 연구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.
- 4) 규정 미준수 연구자의 제재 조치는 재단 사무국과 학술연구운영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거쳐 연구비 지급여부 및 환수를 결정한다.

#### 제 15 조 (연구비 정산 규정)

- 1) 기관(대학 또는 연구소) 소속 연구자의 경우: 연구자는 소속 기관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소속 기관과 연구비 정산을 진행한다. “연구자”는 “재단”에 별도의 연구비 정산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2) 제 8 조 제 4 항 연구자의 경우: “연구자”는 “재단”에 별도의 연구비 정산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3) 만약 “연구자”가 연구비를 사업비 지원 대상이 된 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, “연구자”는 기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<부칙>

이 규정은 2024 년 1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은 2026 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 (제 5 조(지원대상) 개정)